

#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b>회의명</b>	2022학년도 제3회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b>회의일시</b>	2022년 10월 24일 10:30~11:30		
<b>회의장소</b>	사무실		
<b>참석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박**</li> <li>• 외부위원: 김**, 조**, 이**</li> <li>• 내부위원: 정**, 김**,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 김**</li> <li>• 서기: 장**</li> </ul>

## ◆ 회의 안건

1.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심의 · 자문(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2.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유아 진출로 인한 재선출
3.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회의 내용 및 결과 요약

### 1.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심의 · 자문(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수당에 대한 보수 기준)

현행	개정안
제7장 수업료 기타의 비용징수	제7장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
<p>제18조(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와 협의, 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p> <p>①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수업료이외의 기타 비용징수는 관할목적은 수업료,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현장 체험비), 간식 등으로 나뉘어 교육비 산출이 이루어진다.</p> <p>③ 유치원 입학 후 3개월 미만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 체류 시에는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평균 교육비의 3/1 해당하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p> <p>④ 교육비 납입금의 관할목적 중에서 전체 공통비인 차량운영비(현장 체험비), 간식비는 이용하지 않아도 유치원 전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한다.</p> <p>제19조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원아에게 출석정지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p> <p>제20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반환) 원장은 수업료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①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업료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p> <p>④ 유치원 입학 후 결석으로 인한 교육비는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나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체류의 경우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평균 교육비의 3/1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p> <p>⑤ 유치원 원비가 과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⑥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p> <p>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p> <p>1. 법령에 따라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p>	<p>제18조(수업료등의 결정) ①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원의 기타 비용은 간식비,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의 모근 비용의 징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유치원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는 학부모의 동의를 수령하여 유치원장이 징수할 수 있다.</p> <p>③ 유치원 납입금 인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p> <p>④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라북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p> <p>⑤ 무상교육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한다.</p> <p>⑥ 수혜성 경비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고지하고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며, 월별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⑦ 책정·신고된 납입금 외에는 일체 징수하지 않는다.</p> <p>제19조(징수시기) 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의거 수업료는 해당 원 시작되는 10일 이전에는 징수하여야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이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20조(수업료의 반환) 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1항에 의거 수업료가 과납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p> <p>1.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21조(수업료의 면제 및 감액) ①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p> <p>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p> <p>④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p> <p>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p> <p>⑥ 본원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해당 유아에게 수업료를</p>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도록 한다.

제22조 (징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할 유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현장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며 회계처리 절차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8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

제21조(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덕일성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은 해당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8장 교직원

제25조 (교원의 배치) ①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보조인 1인을 예산안에서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②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나 방과후전담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를 둔다.  
 ④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제26조 (교원의 자격) 사립학교법 제 52조에 의거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휴직의 사유)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거 교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휴직의 사유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유치원 장의 임면) 유치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유치원경영자가 임면한다.

제29조(직원) ①본원의 직원 정원은 7명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사무직원(일반직)		사무직원 외(기타직)			
	교육행정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환경미화
정원	2	1	1	1	1	1

②유치원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자격, 보수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교직원의 보수)①덕일성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에 따르며, 연봉의 산정은 보직 및 성과에 따라 연봉기준표 내에서 정한다.

[덕일성유치원 연봉기준표]

구분	하한액	상한액
원장 및 설립자	36,484,800원	108,000,000원
원감 및 대리 업무	27,853,200원	60,000,000원
부장교사	23,439,600원	60,000,000원
담임교사	22,973,280원	60,000,000원
방과후과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보조교사	9,600,000원	60,000,000원
일반직	16,560,000원	30,000,000원
기타직	7,200,000원	21,600,000원

※향후 해당년도 인건비 인상을 반영되며 유치원 예산안에서 직급별 상한액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따른다.

② 덕일성 유치원 교직원 수당의 지급기준은 덕일성유치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덕일성유치원 연봉기준표]

구분	산정기준	비고 (지급 시기 등)
법정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 교직원의 사전 신청과 원장의 승인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의 범위는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시간외 수당 산정 방법 = {(기본연봉+고정수당/12) ÷ 209 × 1.5}	매월
	야간근무 수당 ○교직원의 사전 신청과 원장의 승인이 있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한 지급 ○야간근무수당 산정 방법 = {(기본연봉+고정수당/12) ÷ 209 × 야간근무 시간 × 0.5}	매월
	연가보상 ○교직원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	3월 보수 지급

		○연가보상비 산정 방법 = {(기본연봉+고정수당/12)÷209×8×자연 연가 일}	일																																
과세수당	근속수당	○교직원의 직종 및 근무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년차</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원장(또는 설립자)</td> <td>5~10년차</td> <td>50만원</td> </tr> <tr> <td>10~15년차</td> <td>100만원</td> </tr> <tr> <td>15~20년차</td> <td>150만원</td> </tr> <tr> <td>20년차 이상</td> <td>200만원</td> </tr> <tr> <td rowspan="4">원감 및 담임교사</td> <td>5~10년차</td> <td>5만원</td> </tr> <tr> <td>10~15년차</td> <td>10만원</td> </tr> <tr> <td>15~20년차</td> <td>20만원</td> </tr> <tr> <td>20년차 이상</td> <td>30만원</td> </tr> <tr> <td rowspan="5">부담임 교사</td> <td>2년차</td> <td>3만원</td> </tr> <tr> <td>3년차</td> <td>5만원</td> </tr> <tr> <td>4년차</td> <td>5만원</td> </tr> <tr> <td>5년차</td> <td>7만원</td> </tr> <tr> <td>6년차 이상</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년차	금액	원장(또는 설립자)	5~10년차	50만원	10~15년차	100만원	15~20년차	150만원	20년차 이상	200만원	원감 및 담임교사	5~10년차	5만원	10~15년차	10만원	15~20년차	20만원	20년차 이상	30만원	부담임 교사	2년차	3만원	3년차	5만원	4년차	5만원	5년차	7만원	6년차 이상	10만원	매월
	구분	년차	금액																																
	원장(또는 설립자)	5~10년차	50만원																																
		10~15년차	100만원																																
		15~20년차	150만원																																
20년차 이상		200만원																																	
원감 및 담임교사	5~10년차	5만원																																	
	10~15년차	10만원																																	
	15~20년차	20만원																																	
	20년차 이상	30만원																																	
부담임 교사	2년차	3만원																																	
	3년차	5만원																																	
	4년차	5만원																																	
	5년차	7만원																																	
	6년차 이상	10만원																																	
보직 연구수당	○교직원이 근무 중 별도의 보직에 임명되어 근무하는 경우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하한액</th> <th>상한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0원</td> <td>300,000원</td> </tr> </tbody> </table>	하한액	상한액	10,000원	300,000원	매월																													
하한액	상한액																																		
10,000원	300,000원																																		
장려수당	○교직원이 차우개선을 목적으로 부담임 및 방과후과정 교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하한액</th> <th>상한액</th> </tr> </thead> <tbody> <tr> <td>50,000원</td> <td>200,000원</td> </tr> </tbody> </table>	하한액	상한액	50,000원	200,000원	매월																													
하한액	상한액																																		
50,000원	200,000원																																		
당직수당	○통상근무 외 당직근무에 대해 지급 ○당직근무내용: 근무시작전 오전등원지도 및 방과후과정 하원지도 ○지급액 = 50,000/1주일(산출근거: 평균시급액)	매월																																	
행사근무수당	○통상근무 외 행사 등으로 인한 근무에 대해 지급 ○지급액: 50,000원/종일근무시, 30,000원/반일근무시	매월																																	
가계보전수당(비과세부분)	유아휴직수당	○월급여액의 40% (상한액:1,000,000원)*85% ※복직 후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 남은 15% 합산 가능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량의 소유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기관 행사 등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급	매월																																
	정액급식비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매월																																
	연구수당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매월																																
※향후 해당년도 인건비 인상을 적용하여 직급별 상하한액 변경하며 유치원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규칙 및 시행세칙 규정 및 개정	제9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22조(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교직원위원회(혹은 원장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시행 세칙) '보수규정'과 같이 본 원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소위원회를 겸한다.)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 외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신설	제10장 규칙개정절차  제33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 2.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유아 전출로 인한 재선출

운영위원회 위원의 유아 전출로 인한 위원회 재선출 안내를 했으나 후보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진추천으로 별출반 장\*\* 유\*\*학부모가 무투표 당선됨을 알린다.

## 3.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구분	덕일성 유치원 회계	비고
기정예산액	640,344,000	
경정예산액	709,184,000	
비교증감	68,840,000	
세부명세서	붙임안 참조	

## 4. 기타 첨부 서류

가. 덕일성 유치원 규칙 1부.

나. 2022학년도 1차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

2. 추가 의견 없음.